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6. 24.(수) 총 3매(본문 3)	
담당 부서	도시교통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송천, 사무관 강준식, 주무관 최소영 • ☎ (044) 201-3814, 3811	
보 도 일 시		2020년 6월 2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24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

-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· 주의 안내 표지 설치
- 시·군·구에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· 3년 주기 안전관리실태조사

- ☐ 앞으로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한다.
- ☐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(일명 하준이법)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☐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,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 · 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.
-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 · 점검하고,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.

- 또한,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하였다.
-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금년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,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어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,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,
-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“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”이라고 밝히고, “주차장 설치·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·점검 책임을 다할 것”을 요청하였다.
- 아울러, “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(핸들)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 교통안전에 협조해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강준식 사무관(☎ 044-201-381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